

# 육아정책 소식

## 교육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공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5일(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3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18.10.25.)’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개정안은 에듀파인이 현원 200명 이상 유치원 대상으로 1단계 도입되고, 2020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은 의무화되며, 도입하지 않을 시에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회계 및 에듀파인 관련 134명 대표강사를 선발하여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에듀파인 전문 상담 및 지원단을 시·도별 446명 구성하여 맞춤 상담 등을 제공하며, 지난 2월 19일부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전화상담센터(1544-0079)를 개통하여 전화상담 및 원격 연결 등을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

-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보건복지부,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에 출산한 산모 2,9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에 근거하여 산후 산모·신생아 건강 및 안전 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18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마다 실시된다. 본 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요결과 〉	
출산 후 6주 동안(산육기) 산후조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많이 이용한 장소 “산후조리원”(75.1%)</li> <li>가장 오래 이용한 장소 “본인 집”(22.6일)</li> <li>가장 만족도가 높은 장소 “친가”(4.3점/5점)</li> </ul>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 후 6주 내 산후 진찰을 받은 산모의 비율 94.6%</li> <li>산후조리기간 동안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 50.3%</li> <li>산후우울감 해소에 도움을 준 사람 배우자(51.1%)</li> </ul>
만족스런 산후조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후조리원 경비지원(51.1%)</li> <li>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15.4%)</li> </ul>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인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명 증가함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가 수도 4,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 영양 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 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원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거나 복지포(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www.mohw.go.kr), 그리고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이 직접 주도하는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한부모들의 눈높이에서 한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3월 6일(수)부터 20일(수)까지 공모한다. 공모는 두 개 분야로 ① 미혼모/부·한부모 중심 자립프로그램 운영은 미혼모/부·한부모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본인의 경험과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당사자 모임 주도 하에 일손pom앗이, 자조모임 등 자립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며, ② 미혼모/부·한부모 편견·차별 해소 캠페인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세미나, 각종 매체 홍보 등 포용적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도모한다. 공모 대상은 한부모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 3월 20일(수)까 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당당하게 자녀를 양육한 한부모 당사자들의 경험이 공유·확산되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 국무조정실장,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 개최

정부는 3월 5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행안부, 교육부, 고용부, 교육부, 문화부가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기존 대책의 이행상황 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이미 마련된 차량운행제한\*, 석탄 발전 상한계약\*\*,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등의 대책들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 특히 관련부처 장차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소관별 저감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지 및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운영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어린이 및 노인요양시설 등을 찾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실내외 활동 기준 및 상황별 조치를 위한 매뉴얼도 보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 부와 복지부에서는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재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최근 미세먼 지 예보 실시간 공유, 저감사업 확대 등 양국 환경부간 진일보한 협력\*\*\*\* 등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이뤄가기로 했다.

- \* 5등급 2.5톤 이상(서울, 06:00 - 21:00) 및 공공기관 2부제
- \*\* 충남·경기·인천·전남 소재 화력발전 20기 (상한계약과 별개로 삼천포 5.6호, 보령 1.2기는 3~6월 가동중지)
- \*\*\* 대형 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 전국 3만 6천여개 사업장
- \*\*\*\* 한·중 환경장관회의(2.26)